

고려아연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고려아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라 칭하고 영어로는 Korea Zinc Company, Ltd.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산물 제련에 의한 아연괴, 카드뮴괴, 전기동, 산화코발트, 황산(10%이상), 산화카드뮴, 염화아연, 황화아연 및 기타 부산물의 제조 판매
2. 연괴, 은괴, 금괴, 비스머스괴, 안티모니괴, 산화안티모니, 인듐괴 및 기타 비철금속의 제조 판매
3. 비철금속의 합금 및 화합물의 제조 판매
4. 알루미늄 2차지금 및 합금의 제조 판매
5. 열공급사업
6.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판매
7. 형광체 및 관련소재 제조 판매
8. 전자공업용 약품 및 정밀화학원제 제조 판매
9. 전자재료, 반도체재료 및 전자관용재료 제조 판매
10. 폐기물 처리업
11. 폐기물 재생 및 이용업
12.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13. 환경오염방지시설업
14. 산화철(Ferric Oxide), 분철, 함은연재 및 용재 제조 판매
15. 광업
16. 레미콘의 제조 판매
17. 건설용 석재채굴업
18.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9. 산업용 모래 채취업
20. 전 각호의 제품 및 부산물의 가공 판매

2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판매
22. 귀금속 장신구, 시계 및 관련제품의 도,소매업
23. 금화의 판매
24. 일반무역업, 무역대리업
25. 부동산 임대업
26. 보관 및 창고업
27. 화물운송업
28. 육상 및 수상화물하역업
29. 기술용역업
30. 폐수 재이용업
31. 운동설비 운영업
32. 종합소매업
33.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판매
34.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5. 종합건설업
36. 건축 공사업
37. 산업기계 제작 설치업
38. 기계보수 및 각종기기 보수업
39.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0. 위 36호 내지 39호에 관련한 용역업
4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42. 액체 및 기체상태의 산소, 질소, 아르곤의 제조 및 판매
43. 비철금속 분말의 제조 판매
44. 토양정화업
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46. 전기공급 및 판매업
47.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점, 대리점, 출장소, 공장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의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zin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팔천만주로 한다.

<개정 2025.1.23, 개정 전: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팔백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 개정 전:

“본 회사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일억이천만주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개정 전: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1,200만주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2%이상 1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의 우선주식 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배정하여 위의 주식에 관한 사무취급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주식에 관한 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기준일) ① 삭제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7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액면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제17조의3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3장 사 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 (총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간,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통지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심의할 수 있다.

⑥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신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신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권) 각 주주는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등록된 주식 일주마다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27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와 이사회

제28조 (이사의 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3.28>

②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5.1.23>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정)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제한다.

④ 사장, 부사장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8>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의장 및 결의)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25.3.28>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4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의결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3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감사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사외이사후보추천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6장 계 산

제38조 (회계연도) 본 회사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회계제도) 본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42조의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8>

제7장 보 칙

제43조 (규칙) 이사회는 본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 (적용규정) ①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본 정관에서 인용한 법령이 개정된 때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5조 (정관변경) 본 정관의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주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부 칙

- ① 본 정관은 1974년 7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5년 12월 3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6년 3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6년 6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6년 10월 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6년 11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7년 2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7년 4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7년 9월 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8년 2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79년 2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1년 2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2년 2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2년 6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3년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5년 2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7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8년 9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89년 2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0년 2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2년 3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3년 3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4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5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7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1999년 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00년 2월 2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01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단, 제41조의2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08년 2월 2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23년 3월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24년 3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본 정관은 2025년 1월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정관 개정 안건이 승인되는 즉시 시행한다.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7.자 2025카합20144 결정에 따라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제1항에 대한 정관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
- ① 본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